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246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8087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24671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청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D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E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천시 2020. 6. 30. 접수 F로 마친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8.부터 같은 해 2. 3.까지 아래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2,400,000원(= 21,000,000원 + 13,300,000원 + 18,1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실행일자	여신번호	대출금액	만기일자
2020.01.08.	G	21,000,000	2020.07.10.
2020.01.13.	H	13,300,000	2020.07.10.
2020.02.03.	I	18,100,000	2020.08.10.

나. 원고는 2020. 1. 7. C에게 15,5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17.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5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는 2020. 6. 30.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

구분	차량번호	채권가액	설정일자	저당권설정접수번호
1	(차량번호 1)	18,000,000	2020.06.30.	D
2	(차량번호 2)	14,000,000	2020.06.30.	E
3	(차량번호 3)	18,000,000	2020.06.30.	F

라. C는 2020. 7. 10.경부터 이 사건 제1, 2, 3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채권 등은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부천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적극재산 1.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액 합계 237,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C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 별지 소극재산 목록 기재와 같이 가액 합계 437,475,29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이 약 437,000,000원에 이르러 적극재산 합계액 237,000,000원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자동차 목록

- | | | |
|---|--------------|--|
| 1 | 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 제원관리번호 | A01-1-00060-0023-1316 |
| | 차명 | K7 |
| | 차종 | 승용 대형 |
| | 차대번호 | <input type="text"/> |
|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G4KKJ, 2017 |
| | 사용본거지(차고지) | 경기도 부천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
| | 등록연월일 | 2016.12.14. |
| 2 | 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 제원관리번호 | A01-1-00059-0047-1215 |
| | 차명 | 스포티지 |
| | 차종 | 승용 중형 |
| | 차대번호 | <input type="text"/> |
|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4HA, 2016 |
| | 사용본거지(차고지) | 경기도 부천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
| | 등록연월일 | 2016.05.19. |
| 3 | 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 제원관리번호 | A01-1-00056-0123-1317 |
| | 차명 | 카니발 |
| | 차종 | 승용 대형 |
| | 차대번호 | <input type="text"/> |
| |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D4HB, 2018 |
| | 사용본거지(차고지) | 경기도 부천시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
| | 등록연월일 | 2017.06.16. |

적극재산 목록

순번	적극재산	가액(원)
1	(차량번호 4 생략) 아슬란 차량	24,000,000
2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	22,500,000
3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22,500,000
4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16,500,000
5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차량	23,000,000
6	(차량번호 6 생략) K7 차량	17,500,000
7	(차량번호 7 생략) K3 차량	11,000,000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0
	합계	237,000,000

소극재산 목록

순번	소극재산	가액(원)	비고
1	이 사건 제1 내지 5 차용금 채무	79,581,199	갑 제8호증
2	K은행에 대한 채무	39,000,000	갑 제9호증
3	경기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30,000,000	
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000,000	
5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	
6	K은행에 대한 채무	14,114,000	
7	L에 대한 채무	24,806,000	
8	M카드에 대한 채무	16,000,000	
9	N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	4,100,000	
10	J에 대한 채무	49,008,880	J에 대한사실조회결과
11	K은행에 대한 채무	50,865,213	
12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0	을 제4, 5호증
합계		437,475,292	

